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6일 한선재 의원 등 9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선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지난해 국무 총리실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안 등을 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폭력사건으로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근본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임.

-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유해환경 개선, 필요한 자원 조달과 시민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기능, 회의, 위원장의 직무, 간사, 실비보상 등의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사항 등 시책 추진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한 구조, 보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아동·여성폭력 피해 긴급지원 센터에 대한 설치와 운영, 그 기능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과 추진등을 위한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여성의 쉼터, 성폭력 상담소 등과 의 역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조례에 유관기관들과의 지역연대 기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상 한선재 의원)
○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없음의 의미는?	○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뜻임.
○ 의원발의 조례가 발의되면 입법의 타당성과 예산수반 등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우나,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잘 알겠음. (이상 가정복지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

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범죄 피해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부천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필요하면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3장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긴급의료비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피해자에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른 의료비 지원 외에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긴급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아동·여성폭력 피해 긴급지원 센터 설치운영

제16조(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 아동·여성폭력피해 긴급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운영) ① 센터는 부천시의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 상담
2.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3.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4.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의, 심리치료사, 아동 상담사 등의 위촉 관리
5.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 등을 위한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511호
의결 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발의년월일 : 2009. 11. 16.

발 의 자 : 한선재의원등9
인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지난해 국무 총리실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안 등을 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폭력사건으로 범죄피해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근본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임.
-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유해환경 개선, 필요한 자원 조달과 시민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나.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기능, 회의, 위원장의 직무, 간사, 실비보상 등의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라.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사항 등 시책 추진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한 구조, 보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아동·여성폭력 피해 긴급지원 센터에 대한 설치와 운영, 그 기능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과 추진등을 위한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행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범죄피해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부천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필요하면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3장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긴급의료비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피해자에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른 의료비 지원 외에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긴급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아동·여성폭력 피해 긴급지원 센터 설치운영

제16조(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아동·여성폭력피해 긴급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운영) ① 센터는 부천시의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 상담
2.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3.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4.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의, 심리치료사, 아동 상담사 등의 위촉 관리
5.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 등을 위한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條(定義)①이 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1. 刑法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중 第242條(淫行媒介)·第243條(淫書等の頒布等)·第244條(淫書等の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
2. 刑法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중 醜行 또는 姦淫을 目的으로 하거나 醜業에 사용할 目的으로 범한 第288條(營利等を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第292條(略取, 誘引,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 다만,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第293條(常習犯. 다만,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88條의 未遂犯 및 第292條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誘引이

- 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3. [刑法](#)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중 第297條(强姦)·第298條(强制醜行)·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第300條(未遂犯)·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第302條(未成年者等に 對한 姦淫)·第303條(業務上威力等に 依한 姦淫) 및 第305條(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의 罪
 4. [刑法](#) 第339條(强盜强姦)의 罪
 5. 이 法 第5條(特殊强盜强姦등) 내지 第14條의2(카메라등 利用撮影)의 罪

第3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有害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靑少年에 對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靑少年에 對한 性教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教育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新設 [1997.8.2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 第4條(責任)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健康과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策을 施行하여야 한다.
- ②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을 家庭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③모든 國民은 兒童의 權益과 安全을 존중하여야 하며, 兒童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④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兒童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强구하여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

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9.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0.1.12](#), [2007.8.3](#)>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構成員사이의 身體的, 精神的 또는 財産上 被害를 수반하는 行爲를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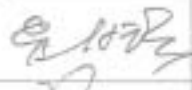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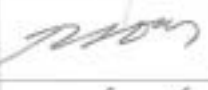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거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서명 명부

의원성명	서명·날인	의원성명	서명·날인
한운석			
유중혁			
신석환			
김민원			
윤서영			
이광리			
박충국			
김희승	